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0가단10210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정원

피고1. B

2. C

변론 종결2021. 3. 31.

판결 선고2021. 7. 21.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6,133,937원 및 그 중 3,789,190원에 대하여는 2019.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2,783,740원에 대하여는 2019.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6. 1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7,569,22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C은 원고에게 17,569,2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출금 채권

-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은 2015. 3. 11. 피고 B에게 4,000,000원을 만기일 2019. 3. 11., 약정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34.9%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1 대출금'이라 한다)하였다.
- 2)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15. 4. 20. 피고 B에게 3,000,000원을 만기일자 대출일로부터 36개월, 약정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연 34.9%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2 대출금'이라 한다)하였다.
- 3) 원고는 2015. 10. 15. D로부터 이 사건 1 대출금 채권을, 2015. 11. 30. E로부터 이 사건 2 대출금 채권을 각 양수하고, 피고 B에게 이를 모두 통지하였다.
- 4) 2019. 12. 29. 현재 이 사건 1 대출금 채무는 원리금 합계 9,308,631원(원금 3,789,190원, 이자 5,519,441원)이 남아있고, 이 사건 2 대출금 채무는 원리금 합계 6,825,306원(원금 2,783,740원, 이자 3,973,937원)이 남아있다.

나.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 1) 피고들의 부 F는 2016. 2. 23. 사망하였고, F의 자녀들인 피고들은 2016. 6. 17.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C이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5. 12. 1. 근저당권자 G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후인 2016. 6. 24.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피고 B의 채무 초과

1)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 B는 채무 초과 상태였고,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2) 2017. 1.경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90,000,000원이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51,242,24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 울산지방법원장, G 주식회사, H기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양수금청구 및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에게 16,133,937원 및 그 중 3,789,190원에 대하여 2019.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 2,783,740원에 대하여 2019.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은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3.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6. 6.경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0. 1.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한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 1년 전에 이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피고 B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가 원고를 해할 의사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추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 C에게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피고 B의 자산이 50,000,000원 상당이 증가하였으므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참조). 피고 C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상속인들 사이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인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을 금전으로 바꾼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피고 B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 C은 부친의 지근거리에 살면서 대소사를 챙겨왔고 병원비를 지불하는 등 실질적인 부양을 하였으므로 기여분만큼 피고 B의 상속지분 20,000,000원을 추가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1,242,244원이 상환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하고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원고가 구하는 16,133,937원 및 2019. 12. 30.부터 2020. 8. 14.까지 지연손해금, 합계 17,569,223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액 중 피고 B의 상속지분 상당액인 19,378,878원 $\{= (90,000,000 - 51,242,244\text{원}) \times 1/2\}$ 이 위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한다.

따라서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17,569,22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은 원상회복을 위해 원고에게 17,569,2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윤아

별지